

<거래 예>

(주)가나다통상은 미국 DEF사에게 수입채무 U\$1,000,000가 있으나 DEF사의 요청에 의해 수입채무 중 U\$500,000을 미국 ABC사에게 지급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함

【지급등의 방법(변경) 신고서】

[별지 제5-1호 서식]

지급등의 방법(변경) 신고서					처리기간	
신 고 인	상호	(주)가나다통상				
	대표자성명	홍길동				
	사업자등록번호	000-00-00000				
	주소	서울 중구 남대문로 00				
거 래 내 용	거래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거래 <input checked="checked" type="checkbox"/> 수입거래 <input type="checkbox"/> 용역거래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거래				
	계약 상대방	상호 및 대표자성명	ABC Company, Bill james			
		주소, 전화번호	1122 Battery Street, San Francisco 1-309-387-0000			
	결제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장(L/C) <input type="checkbox"/> 추심(D/P, D/A) <input checked="checked" type="checkbox"/> 송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	
금액	계약금액	U\$1,000,000	신고금액	U\$500,000		
지 급 등 의 방 법	(1)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	결제기간	당초기간		변경	
		결제시기	당초시기		변경	
		결제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
	(2) 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, 차기	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	貸記		잔액	
			借記			
		결제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
(3) 기타	구 분	<input checked="checked" type="checkbox"/> 제3자 지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				
		결제시기	2017.8.1 - 2017.8.7			
변 경						
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2017년 7월 18일 신고인 (주)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(주)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(인)						

(전화 02-333-3333 )

한국은행총재 귀하

(외국환은행의 장)

\* 첨부서류: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(작성 요령)

### ㉠ 거래종류

- 제3자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발생의 거래종류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(주)가나다통상의 DEF사에 대한 수입거래가 제3자 지급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수입거래란에 표시

### ㉡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

- 계약상대방은 제3자 지급 대상 업체를 기재하며 계약상대방의 상호, 주소, 연락처번호를 기재한 후 거래종류별 대금결제방법에 표시

### ㉢ 금액

- 계약금액에는 원인채권이나 채무의 금액 전체(위의 경우는 U\$1,000,000)를 기재하며 신고금액에는 계약금액 중 제3자 지급등의 대상이 되는 금액(위의 경우는 U\$500,000)만을 기재

### ㉣ 기타

- 구분 : 제3자 지급 부분에 표시

- 결제시기 : 결제예정시기를 기재. 결제가 분할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지급스케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기재

### ㉤ 신고인 관련부분

-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,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.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'(주)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'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

## (첨부서류 안내)

1. 신고서2부 (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)

2. 사유서: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

3. 신고인및거래 (계약)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

- 개인 :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1개), 인감증명서(인감 날인시)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1개), 인감증명서(인감 날인시)
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(해외법인 : Certificate of Incorporation)

4. 제3자지급등에관한합의서: 관련거래 당사자들이 동방식의 대금결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문서, 내부품의서류 등

5. 제3자지급등의대상이되는채권채무확인서류

- 수출채권: 수출계약서, 수출신고서, Invoice등
- 수입채무: 수입계약서, 수입신고서, B/L, Invoice등
- 용역계약: 용역계약서, Invoice, 납부세액확인서등
- 자본거래: 관련계약서, 인정된거래임을확인하는서류

6. 제3자지급등의사유에대한증빙서류

7. 위임장\* :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(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)을 추가 제출

\*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

8.서약서 (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)

9.기타신고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

- 대북교역관련거래일경우'물품반입승인서'와'주민접촉신고서'제출

※ 지급신고 당일처리는 불가하며 첨부서류 완비 후 2일(영업일 기준)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